

Global Market Report

신통상투자전략으로 미리보는 2016년 EU 통상정책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유럽연합(EU) 신통상투자전략 개요

- 2 1. EU 집행위, 신통상투자전략 발표
- 4 2. EU 통상정책 연혁

II. 신통상투자전략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6 1. 효율적인 통상투자정책
- 11 2. 투명한 통상투자정책
- 13 3. 유럽 가치에 기반을 둔 통상투자정책
- 18 4. 세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상 방안

III. 2016년 EU 통상정책 전망

- 24 1. 2016년 EU 집행위 통상투자정책부문 업무 계획
- 25 2. 2016년 EU 통상투자정책 분야별 세부 계획
- 31 3. 향후 전망

요 약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Trade for All: Towards a more responsible trade and investment policy』 제하의 EU 신통상투자전략을 발표함. 신통상투자전략은 효과성, 투명성, 유럽의 가치라는 세 가지 핵심원칙에 기반을 두어 통상정책이 모두에게 혜택을 보장하는데 주력함.
- EU의 신통상정책은 유럽의 글로벌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서비스 무역, 디지털 교역과 같은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어 통상정책의 효과적 이행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함.
- 과거 어느 때보다 통상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원국·유럽의회·시민사회 간 참여를 보장하여 통상협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
-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공정무역 및 윤리무역 장려, 인권 개선을 통해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유럽의 인권·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준수하여 그 가치를 통상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임.
- WTO 다자통상체제 재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비롯해 EU-미국 FTA(TTIP), EU-일본 FTA 논의 촉진, 아태지역과 전략적 협력, 중남미지역과 역동적 의제 발굴, 아프리카와 관계 재정립, 기체결 FTA의 협정 현대화 등 EU 역내외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마련 중임.
- '16년 유럽은 경제 성장 동력을 역외국가에서 모색하며, 최우선 통상과제인 미국과의 TTIP 협상에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환경상품협정(EGA) 등 복수국간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며, FTA 타결국가와 발효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신통상투자전략 발표 개요

-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5.10.14 새로운 세계경제 현실에 맞춰 신통상투자전략(New Trade and Investment Strategy)을 발표함.
- 『Trade for All: Towards a more responsible trade and investment policy』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신통상투자전략은 효과성, 투명성, 유럽의 가치라는 세 가지 핵심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음.
- "Trade for All"에서 제안한 신통상투자전략은 통상정책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춤.
 - (소비자) 보다 낮은 가격, 보다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보장
 - (근로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함에 있어 효과적인 통상협정을 제정함으로써 유럽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
 - 미국 및 일본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아태지역 및 중남미지역과의 새로운 통상협상을 개시함으로써 고용을 창출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근로기본권 관련 강력한 규정을 포함
 - (시민) 협상을 보다 투명화해 시민이 통상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 모든 협상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제안함으로써 통상협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회를 보다 쉽게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
 -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무역장벽에 대해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

□ 신통상투자전략의 3대 핵심원칙

- 효과성(Effectiveness) : 통상정책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투명성(Transparency) : 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서 향후 진행될 모든 협상에서 핵심 협상 문건을 공개
- 유럽의 가치(Values)¹⁾ : 역내에서 유럽의 사회적, 규제적 모델을 보호함으로써 유럽의 기준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통상협정,特惠제도 등 유럽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적용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

□ 신통상투자전략의 필요성

- (통상협정에 대한 토론) EU-미국 FTA(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를 위시한 통상협정에 대한 토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통상정책이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구매하는 외국산 상품이 공정한 근로조건 하에서 만들어지고 환경파괴 없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확인 받기를 희망함.
- (글로벌가치사슬)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에서 무역은 변화의 중심에 있음. 상품과 서비스는 다양한 국가의 글로벌가치사슬을 통해 만들어지고, 인터넷과 해외출장을 통해서 접근이 용이해짐. 이는 과거처럼 단지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을 넘어서 무역이 우리 경제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하며, 통상정책에 새로운 관점(outlook)과 도구(tools)가 필요함을 의미함.
- (목표시장) EU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의 중요한 국가들과의 협상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다자협상, 양자협상, 투자협정 등에서 유럽의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함.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기술과 같은 고도혁신부문에 서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도 포함함.
- (기존 협정 활용도 개선) EU는 기존 발효된 통상협정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모든 기회를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음. 일례로 통상협정을 통해 관세율이 낮아졌지만 활용률은 아직 낮아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함.

1) 유럽의 가치 : 지속가능발전, 인권, 공정 및 윤리무역(fair and ethical trade), 부패와의 전쟁 등

□ EU 관세동맹 출범('68년)

- 관세동맹 출범으로 공동대외관세율(common customs tariff)과 공동통상정책이 도입
- '70.1.1 이후부터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공동통상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

□ 유럽연합 창설조약('93년)

- 법적 근거 : 동 조약 제3조 및 제131~134조
 - 제3조 (1)(b)항 : 공동통상정책이 EU 공동체의 활동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
 - 제131조 : 공동통상정책의 목적(국제교역의 발전, 교역장벽과 관세 인하)
 - 제132조 : 수출신용 등 회원국 해외수출지원제도의 조화 당위성
 - 제133조 : 공동통상정책의 범위,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권한, 표결 정족수 등
 - 제134조 : 공동통상정책으로 특정 회원국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처리 원칙
- '96년 개정 :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분야 협상권한 추가
- '01년 개정 EU 창설조약(Nice 조약) : 공동통상정책의 범위와 관할 주체를 명시

□ 경쟁력 있는 유럽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 발표('06년)

- '06.10월 EU 집행위원회는 경쟁력 있는 유럽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역내외 시장개방, 강력한 다자간 무역체제 수립, 유럽의 가치(민주주의, 법치 등) 및 지속가능한 발전(환경, 노동) 추구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발표

□ 『Global Europe Strategy』 채택('06년)

- 주요 내용 :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
- EU 집행위의 글로벌 유럽전략²⁾ 채택 배경
 - (대내) EU 경제의 성장잠재력 크게 저하(인구 고령화 가속화 등)
 - (대외) DDA 협상 지체, 미국 등 경쟁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 아시아 신흥국가의 고성장 등

2) European Commission(2006), <Global Europe : Competing in the World>

□ 리스본 조약³⁾에 따른 EU의 배타적 대외정책 권한 확대('09.12.1 발효)

- EU의 배타적 권한 확대 : 기존 통상부문 이외에 투자부문 추가
- 유럽의회가 이사회와 함께 국제투자협정을 협상하고 비준하도록 유럽회의의 위상 격상
- 대외무역을 외교정책, 개발, 인도적 지원, 국제환경정책과 함께 대외활동의 범주에 포함

□ Europe 2020 Strategy -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발표('10.11.9)

- EU 집행위, 향후 5년간 EU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담은 보고서 발표
- 주요 정책 과제
 - DDA 협상 타결 및 인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 ASEAN 등 협상 진행 중인 주요국과의 FTA 타결
 - 미, 중, 러, 일 등 전략적 동반자 국가와 통상관계 강화, 특히 비관세장벽 철폐 등 규제조화
 -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EU 기업의 세계시장 접근을 개선
 - 주요 교역 국가와의 포괄적인 투자협정 협상 개시
 - 공정무역 및 지식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 보장강화
 - 무역이 개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 New Trade and Investment Strategy 발표('15.10.14)

- '14.11.21 용커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통상분야 외교이사회(Foreign Affairs Council-Trade)에서 EU 집행위가 2010년 발표한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에 대한 개정 요구
- '15.11.27 외교이사회(FAC, Foreign Affairs Council)에서 신통상투자전략 채택
 - *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다른 사항들은 집행위원회의 제안과 일반적인 협의 및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힘.

3) 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부상에 대응

□ 서비스 무역 촉진

- 서비스는 EU GDP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제무역에서 중요성 점증
 - 제조에 포함된 서비스의 증가는 EU 역내외 모두에서 서비스 자유화를 요구
 - 서비스 무역 촉진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한 개방도 포함
- EU는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에 참여하는 23개국 중 하나('15.7월 기준)
 - * 복수국간서비스협정은 '12년부터 서비스교역 자유화에 관심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복수국간무역협정
- 추진 중인 WTO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도 환경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다뤄져야 함.
 - * 환경상품협정은 '14.7.8 협상을 시작한 복수국간무역협정으로서 EU, 호주, 캐나다, 중국, 코스타리카,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가 참여

■ 모든 통상협상에서 성과를 추구하면서 서비스 무역에 주안점을 둠.

□ 디지털 교역 원활화

-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데이터의 흐름은 EU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 중요해졌고, 규제 협력, 상호인증, 표준 조화는 디지털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임.
- EU 역외에서 불투명한 원칙, 정부간섭, 데이터 강제 현지화(foced localization) 및 데이터 저장 요구 등과 같은 많은 장벽에 부딪히게 됨.
- EU의 목적은 비차별적이고 데이터 강제 현지화 요구가 없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임.

■ 전자상거래, 국제데이터 이동을 위한 원칙을 세우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보호주의를 막기 위해 FTA, TiSA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 및 촉진을 위한 국제적 참여를 지속

□ 인력이동 지원 및 이민 처리

- 전문가의 일시이동은 모든 부문에서 국제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음.
-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일시이동 경제적 잠재력은 유럽이민의제에서 강조됨.

- 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특정 상품·장비와 직접 관련된 인력이동에 대해서는 해당상품 시장접근 협상과 동등하게 협상
- 상대국의 유럽 전문가에 대한 상호대우제공의 대가로 통상투자협정에 기업내이동지침 (ICT, Intra-Corporate Transfer)의 특정 혜택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
- 통상협정에서 EU가 양허한 것에 맞춰 임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국민의 EU 입국거주 조건들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Blue Card Directive⁴⁾를 재검토
- 통상협정에서 전문직 자격(professional qualifications) 인정을 장려

□ 국제규제협력 강화

- 다양한 규제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양자협상에서 다루는 것이 쉽기는 하지만 지역 및 글로벌 해결방안이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짐.

- 협상 시 EU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서 규제이슈를 최우선시하고, 국제규제포럼에서 보다 광범위한 규제협력을 위해 노력
- 협정 이행 및 규제협력을 통해서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을 지속

□ 세관업무의 효과적인 관리 보장

- 국제공급망을 통한 상품 이동의 효율적인 관리는 필수불가결
- WTO, 양자협정에서 무역원활화 이행 및 향후 추진될 FTA에 무역원활화 조항이 포함 되는 것은 통상정책에서 갈수록 중요해짐.

- 기존 상호 행정적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글로벌공급망에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이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제도를 사용하도록 장려

□ 에너지 및 원자재에 대한 접근 보장

- EU 입장에서 수입자원에 대한 의존성, 에너지 및 원자재에 대한 이용은 EU의 경쟁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함.

4) 고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EU에서 근로 및 거주할 수 있는 노동허가에 관한 지침(Council Directive 2009/50/EC)

■ 유럽에너지연합(EEU, European Energy Union)을 설립하고, 원자재 계획과 연계하여 노력을 확대하는 일환으로 각 통상협정에 에너지 및 원자재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 도입을 제안

□ 혁신 보호

- 창의성, 연구 및 디자인은 가치사슬 경제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들 세 가지는 EU 고용의 1/3과 EU 수출의 90%를 차지함.
-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단속이 미흡하고, 경우에 따라 기술이전을 강요받기도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이 취약함.
- 따라서 EU 통상정책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 지리적 표시, 거래비밀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혁신적인 고품질상품을 지원해야 함.

■ FTA 및 WTO에서 지재권 보호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교역파트너들과 모조품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

■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⁵⁾에 대한 장려를 지속하고, 최빈국에 대해서는 WTO TRIPs 협정 하에 의약품에 대해 영구적인 예외자격을 부여하는 등 빈곤국가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개선

나. 약속 이행(시행, 집행, 중소기업 및 노동자)

□ 이행 개선

- EU가 FTA를 확대해왔지만 유럽기업들의 활용률은 낮은 상황
- 활용률 제고는 집행위, 회원국, 유럽의회 및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공동책임
 - － (집행위)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의 복잡성, 불충분한 정보 및 지원 등 이슈 해결 필요
 - － (회원국) 관세제도의 운영 및 이행과 교역 및 투자촉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 필요
 - － (유럽의회) 통상협정의 지속가능발전 장(chapter)의 이행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 기대

5) 글로벌보건안보아젠다(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 국제보건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된 국제공조체제

- 원산지규정의 단순화 및 일관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용자 편의적인 정보를 제공
- 회원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EU 관세법 상 회원국정부의 통관수속 간소화 이행을 보장하고, 전자지불을 포함해 가장 효율적인 전자시스템 채택을 위해 회원국들과 협력
- 이는 관심제고 및 관세협력활동, 무역원활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포함해 무역투자장벽 철폐를 넘어 기존 'Market Access Partnership'*을 확장하고 강화할 것임.
- 주요 FTA의 이행에 대해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EU 통상협정의 효율성에 대한 심층적인 사후 분석정보를 제공할 것임. 동 보고서는 부문별 및 회원국별 분석은 물론 교역상대국들 경제에 대한 영향도 포함.

* Market Access Partnership : '07.4.18 EU 집행위원회는 'Global Europe: A Stronger Partnership to Deliver Market Access for European Exporters' 보고서를 채택함. 해외무역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수출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이 전략은 집행위원회의 글로벌 유럽 통상 정책프레임워크(Global Europe trade policy framework)의 한 부분임.

□ EU의 권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집행

- 상대국이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이행하도록 보장 필요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집행위 및 회원국의 참여는 기본
 - 만약 상대국과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사용
- 통상협정의 잠재적 혜택은 모든 회원국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불필요한 시간지연이나 비용을 야기할 수 있는 시장접근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위, 회원국, 업계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 EU는 세계 주요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농식품분야에서 단일경제공동체(single entity)로 인정받는 것이 필수적임.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조치를 통해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강경대응 필요

- 모든 외교적 자산이 EU의 무역투자 이익을 지원하는데 쓰이도록 경제외교에 대한 보다 조직화된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
- 비관세장벽의 신속한 철폐를 위해 최근 FTA 협정에서 합의된 중재절차를 사용
- 보조금 지급 및 우회수출(circumvention)에 대해 특별한 관심
- 무역구제수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

□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고려 강화

-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입비용은 대기업에 비하여 크게 과중함.
 -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상품허가(authorization of products), 전문직자 격인정(recogni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등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비슷한 비용이 들겠지만 국제화, 신시장 개척, 무역투자장벽 극복, 법규 준수 등을 위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
 - 협정을 통한 장벽 철폐와 규제 융합(regulatory convergence)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유리할 것임.
- 시장진출기회에 대한 정보접근의 비대칭성 해소
 - 대기업은 법적, 경제적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어려움.

- 모든 통상협상 시 해외시장에서 제품 요구사항, FTA가 제공하는 시장기회, 이용 가능한 지원정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전용 규정을 둬.
- 무역투자협정에서 중소기업의 특성이 고려되도록 함.
- 회원국 무역진흥정책이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과 조화되도록 함.
- 특정 해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 기관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

□ 근로자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수단 제공

- 수출이 고용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일부 지역이나 기업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음.
- EU와 회원국은 능동적인 고용시장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보다 경쟁력 높은 다른 회사 또는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짐.
 - 교육정책은 중요한 요소로서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해야하며, 구조투자기금(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은 이러한 목적에 사용될 것임.
-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은 핵심적인 정책 수단
 - 명백하게 정의된 단 한번의 실업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지원 제공

-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의 성과를 재검토
- 특히 지속가능영향평가(SIAs,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s) 틀에서 통상투자의 고용관련 영향에 대해 사회적 파트너들의 컨설팅을 강화

2

투명한 통상투자정책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통상정책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특히 TTIP 협상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집행위는 이러한 우려사항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예정임.

가. 보다 긴밀한 협력(회원국, 유럽의회, 시민사회)

- 유럽의회와 집행위는 협상의 모든 단계에서 의회의 긴밀한 참여를 보장하면서 상호 작용을 강화해왔음.
 - 'Better regulation' agenda의 원칙들에 따라서 통상정책분야에서 모든 중요한 정책들은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것임.
 - 주요 통상협정 협상 동안 집행위는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를 실시해 통상협정의 잠재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
 - 집행위는 협상완료 이후 협정의 경제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는 사후 평가(ex post evaluations)를 시행하고 있음.

- TTIP 원칙의 맥락에서 모든 협상에 대해 유럽의회와 긴밀하게 협력
- '시민사회대화' 및 '시민과의 대화'⁶⁾의 맥락에서 시민단체 및 대중과 활발하게 접촉할 것임. EU 집행위원들은 회원국과 회원국 의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것임.
- 회원국 정부가 무역과 관련된 논의에 보다 주도적으로 임하도록 촉구할 것임.

나. 보다 개방된 정책결정 과정

- 통상협상에 대한 투명성 제고
 - 투명성은 보다 좋은 규제의 기초가 되며, 특히 통상협상에서 규제와 같은 국내정치이슈들을 다룰 때 보다 높은 투명성이 요구됨. 집행위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EU 협상 제안서(negotiating proposals)를 공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6) 시민사회대화(civil society dialogue)는 조직/기관 차원이고, 시민과의 대화(citizen's dialogue)는 개인 대상임.

- 이사회는 TTIP 및 TiSA 협상지침(negotiating directives)을 공개했음.
- 집행위는 홈페이지에 모든 집행위원회, 집행위원(cabinets) 및 총국장(Directors-General)이 이해관계기관 대표자들과 가진 회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
- 투명성은 협상 목적 설정부터 협상자체 그리고 협상 이후단계까지 통상협상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함.

- 협상을 개시할 때 이사회가 모든 FTA 협상지침을 승인 즉시 공개토록 요청
- 협상기간 중 EU 협정문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TTIP 관행을 모든 통상 및 투자협상으로 확대하여, 모든 신규 협상 상대국들에게 협상 과정은 투명해야함을 천명함.
- 협상 완료 시 즉시 협정문을 게재할 것임.

□ 무역구제수단(수입규제조치분야)의 투명성 제고

- EU는 공개에 대한 WTO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투명성은 무역구제부문에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함.

- '16년 상반기부터 무역구제조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많은 투명성 제공
 - 이해관계자들이 전용 웹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문서들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 '16년 상반기부터 일반 대중에게 보다 많은 투명성을 제공
 - 기존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재심 제소장(complaints) 및 요청서의 비기밀 버전을 발표
- 중기적으로 수입규제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 법률대리인의 접근을 개선하고, 대외공개용에 대한 일반인 접근 확대가능성과 같이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발굴할 것임.

3 유럽 가치에 기반을 둔 통상투자정책

가. 규제 및 투자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접근

□ 소비자의 구매상품에 대한 신뢰

- 소비자들은 선택권 확대, 가격인하 등 무역장벽 철폐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구매제품의 안전성, 생산과정에서의 인권·노동권·환경 측면에 대해 우려
- 소비자들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구매결정을 내리기 위해 구매상품에 대해 알 권리
 - EU 단일시장원칙은 다른 회원국산 제품을 구매할 때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함.
 - EU의 보건, 안전, 소비자 보호, 노동 및 환경원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호적이고 효과적인 곳 중 하나이지만 세계 모든 지역이 그러한 것은 아님.
- EU의 무역투자정책은 인권·사회적·환경적 측면을 중심으로 모든 생산단계를 통틀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 및 실사(Due Diligence)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응해야함. 동시에 회원국정부는 역내 생산제품 뿐만 아니라 수입된 상품 및 서비스의 EU 규정 준수 감시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함.
- 규제협력은 높은 표준을 장려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기존 EU 통상정책에 따라서 어떤 통상협정도 현재 EU에서 제공되는 수준의 소비자, 환경 또는 사회 및 노동보호의 수준보다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무역투자정책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소비자협회, 전문가그룹 및 관련 시민 사회조직들과 협력
- 통상정책의 소비자에 대한 영향분석을 강화(사전 영향분석 및 사후 평가)

□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법 장려

- 과거 50년 이상 세계 각국들은 투자 보호·촉진을 위해 3,200개가 넘는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망을 구축해왔고, 이중 1,400개는 EU 회원국들이 참여한 것임.
- 현재 논쟁은 투명성 및 중재자의 독립성 결여뿐만 아니라 투자협정 규정 남용에 대한 위험을 부각시켰음.

○ EU는 글로벌 투자제도의 개혁을 이끌기 위한 최적의 상황

- 리스본 조약 발효로 집행위원회가 투자분야에 대한 대외협상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투자보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과의 TTIP 협상에서 이러한 개혁안을 미국 측에 제안함.

- 첫 단계로 양자협정에 현대적 규정을 포함. EU 양자협정은 ISDS를 투자법원체제(Investment Court System)로 전환 추진
- 투자법원에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명백한 행동강령,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및 WTO 상소기구⁷⁾와 같이 영구적인 국제법원의 직원들에 요구되는 수준의 높은 기술적 및 법적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판사가 근무하게 됨.
- 상대국들과 함께 필요한 자격을 모두 구비한 영구적인 국제투자법원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WTO에서의 투자원칙 구체화를 지원할 것임. 이는 현재의 복잡한 양자 투자협정망을 단순화하고 최신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나. 지속가능발전, 인권, 양호통치(good governance) 촉진을 위한 통상 의제

□ 무역 및 투자를 개도국의 포괄적인 성장 지원에 활용

○ EU는 통상정책을 극빈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 EU는 개도국들의 수출에 대해 가장 개방된 시장
 - '01년 EBA⁸⁾ 제도는 EU 시장을 최빈국에게 관세나 쿼터를 없애면서 완전 개방했음. 에너지부문을 제외하고 EU는 최빈국으로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수입함.
 - EU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 국가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s)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
- 통상정책 목적은 개도국들이 지역 및 글로벌가치사슬로 통합되고 고도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전을 지원하는 것임.
 - EU는 이를 위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에서 원산지규정을 완화했음. 이제 개도국들이 원산지규정을 준수하기가 보다 단순하고 쉬워졌으며, 국가들 사이에 지역 및 범지역간 누적에 기초하여 소싱할 가능성이 높아짐.

7) 세계 무역기구 상소기구(Appellate Body) : WTO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상설기구로 7인으로 구성

8) EBA(Everything But Arms)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특혜관세 제공한다는 개념

- EU 및 회원국들은 세계적인 'Aid for Trade(AfT)⁹⁾' 노력을 주도해 왔는데 매년 지원금은 무려 110억 유로로 전세계 지원금의 1/3 이상을 차지함.

- '18년까지 특히 GSP+제도¹⁰⁾의 주요 성과에 기초해 GSP에 대한 중기검토 실시
- 개도국의 통상협정에 따른 기회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¹¹⁾에 입각해 2007년 무역원조전략(AfT)¹²⁾을 재검토
- 광범위한 국제적 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개도국에서 긍정적 전이효과(positive spillover)를 위한 선택권을 제안할 것임.
- 지속가능성 영향 분석에서 최빈국에 대한 예상효과를 심층 분석
- DDA의 마무리라는 맥락에서 의미 있는 최빈국 패키지를 지속 지원하고, G20, WTO 및 다른 다자간 포럼에서 최빈국에 대한 보호주의 조치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그 조치들을 철폐하도록 독려할 것임.

□ 지속가능발전을 촉진

- EU는 지속가능발전의 사회·환경분야 장려를 위한 통상정책 사용을 선도
 - GSP+제도는 인권, 지속가능발전, 양호통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수단
 - EU는 WTO 환경상품협정(EGA)을 위한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의 EU FTA는 제도적으로 통상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와 환경보호를 위해 교역 및 투자 증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임.
 - FTA가 발효되면 EU는 개발협력을 통한 적절한 지원 제공을 포함해 무역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정들이 이행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함.

- FTA 및 GSP의 이행에 있어서 보건 및 작업장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핵심노동기준¹³⁾의 효과적인 이행분야를 우선시할 것임.
- 모든 통상투자협정들에서 혁신적 지속가능발전 장(chapter)을 두기 위해 노력할 것임.
 - TTIP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따라 ILO '양질의 일자리 창출계획(ILO Decent Work Agenda)'과 일치하는 품위 있는 근로조건과 직업상 높은 수준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모든 기본노동권에 대해 높은 양허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환경상품협정과 관련, 환경보호에 관한 높은 수준의 양허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9) Aid for Trade(AfT)는 공적개발원조의 하나로 개도국의 무역능력 개선사업을 의미

10) GSP plus는 국제협약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에 대해 일반 GSP 혜택보다 더욱 우호적인 관세 혜택을 부여

11) 2015.9.25일 UN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2) Joint Strategy on Aid for Trade(2007.10.29일 발표된 EU Strategy on Aid for Trade를 지칭)

□ 공급사슬의 책임경영 보장

- 글로벌공급망의 책임경영은 통상정책을 유럽 가치에 맞춰 조정함에 있어 필수적임. 집행위는 아래 예시와 같은 개별국가 및 특정분야에 대해 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을 개발할 것임.
 - (국가) 방글라데시 Sustainability Compact, 미얀마 Labour Rights Initiative 등
 - (분야) 분쟁광물, 불법벌목 등

■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와 함께 UN, ILO 등의 원칙 이행을 지원

- (UN) 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 Human Rights, Global Compact
- (ILO) Tripartite Declaration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 Social Policy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분쟁광물, 불법벌목에 대한 EU 접근방법의 국제적 활용 장려

■ 의류산업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ILO, OECD와 긴밀히 협력

■ 공급망동반자관계 설정을 위해 새로운 부문별 또는 지리적 기회를 발굴하고 평가

□ 공정무역 및 윤리무역 제도 장려

- 공정 및 윤리무역 촉진은 EU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며 제3국에 있는 소규모 생산자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교역기회를 개발하는데 기여함.
 - 현재 생산자 및 EU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무역제도 활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

■ 공정무역 등 지속가능성 보장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FTA 이행을 위한 기존 구조를 활용

■ EU의 'Aid for Trade' 전략 이행검토 시 공정·윤리 교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고, 공정무역관련 프로젝트를 'Aid for Trade' 보고서의 일부분으로 보고

■ 외교안보고위대표와 협력, EU 해외공관을 통하여 제3국 소재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공정·윤리교역 제도를 기존 우수사례를 활용해 장려할 것임.

■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 등 국제기구를 통해 공정·윤리 교역에 관한 자료수집 지원을 강화

■ "EU City for Fair and Ethical Trade Award" 신설을 통해 인식개선활동 전개

13)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폐지, 직장에서의 비차별, 노조가입 및 단결권의 자유

□ 인권의 장려 및 옹호

- 통상정책은 특히 외교정책 및 개발협력정책과 같은 다른 정책들과 함께 제3국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글로벌공급망에서 아동노동, 죄수강제노동, 인신매매에 따른 강제노동, 토지횡령 등과 같은 인권위반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
- 인권 관련 사항은 EU의 양자통상협정, GSP+제도 등 일방적인 특혜제도, EU 수출통제 정책 등에 포함되어 왔음.
 -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 시,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이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GSP에 따른 특혜대우를 박탈당한 사례

- EU 2015-2018 인권행동계획¹⁴⁾의 통상 및 투자규정의 이행을 보장
- 외교안보고위대표와 최고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특정 GSP 수혜국 및 EBA 수혜국들 간 인권관련 대화를 확대(심각할 경우 GSP 혜택 중단도 가능)
- EU가 GSP를 제공하거나 협정을 맺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국정부와 협력을 통해 아동노동 철폐 및 죄수강제노동 폐지를 지속 추진
- 최근 개발된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사전영향조사 및 사후영향평가 모두에서 인권에 관한 통상정책의 영향 분석을 강화
- 인권위반을 야기하는 디지털감시장치 및 침입시스템(intrusion systems)의 악용방지를 포함해 이중용도제품에 대한 수출통제정책의 현대화를 제안

□ 반부패 전쟁 및 양호통치(good governance) 장려

- 부패는 경제사회에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서 많은 부작용과 왜곡을 초래
- EU의 통상정책은 반부패전쟁에 이미 기여하고 있음.
 - GSP+하에서 EU는 UN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포함하여 양호통치와 관련된 국제조약들을 인준하고 이행하는 국가들에게 무역특혜를 제공함.

- FTA를 법치주의 및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국내개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고, 시스템적 부패와 취약한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설치
- TTIP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통상협정에서 반부패 규정을 협상 시 제안

14) Council Conclusions on the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2015-2019, Doc. 10897/15, 20 July 2015.

가. 다자통상체제의 재활성화

□ WTO 진전 모색

- 세계무역 자유화의 동인(動因)으로서 그리고 무역협상을 위한 탁월한 포럼으로서 재정립하기 위해 WTO는 DDA의 고비를 넘길 필요가 있음.
- '15.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기반을 두어 EU는 WTO의 재활성화를 모색해야 함.
- ㉠ WTO는 세계무역의 원칙 제정 및 집행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
 - * 지난 몇 년간 일부 회원국들은 양자협정 내지 지역협정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교역 현실에 대응책을 개발해오고 있음. 하지만 갈수록 부상하는 글로벌가치사슬과 같은 현실을 생각할 때 오히려 글로벌한 통상원칙이 더욱 필요하게 됨.
 - **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업부문 국내지원 또는 원칙에 대한 규율(Disciplines)은 오로지 WTO에서만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음.
- ㉡ 이슈별 접근을 통한 결과 추구
 - * 2013년 발리 각료회의의 성공은 회원국들이 강점을 지닌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가능했음.
 - **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이슈별 협상은 WTO 의제를 진전시키는데 보다 유망한 방법이 될 것임.
- ㉢ 일부 WTO 회원국 간 진행되는 협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다른 WTO 회원국에게 가입 기회 제공
 - * WTO 체제 하에서 새로운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s)을 허용할 것이며, 이는 현재 WTO 밖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수국간협정들이 WTO에 보다 쉽게 편입되도록 할 예정임.
- 세 가지 원칙을 이행하는 것은 모든 WTO 회원들 특히 최빈국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WTO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교착상태(impasse)의 근본원인부터 해결해야 함.
 - 현재까지 협상의 장애물은 구조적, 기술적, 의제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타협을 이루려는 참여국들의 '의지'의 문제였음.

- WTO 체제가 글로벌 경제 현실처럼 빨리 발전하지 못했음.
 - 주요 교역파트너들의 상대적인 경제력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음에도 WTO 체제에 완전히 반영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개도국들의 다자교역체제에 대한 공헌 및 이에 따른 혜택 사이 불균형이 커지고 있음.
 - WTO 체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재균형화는 향후 진전을 위한 핵심적인 조건으로 개도국은 WTO에 따른 혜택만큼 WTO에 대한 기여도 반영하도록 해야 함.

[단기]

- DDA 종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장기]

- 세계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원칙 개발을 WTO의 핵심으로 하고,
- 목표지향적인 제안을 하고,
- WTO 내 계획 진전을 위한 목표를 지지하며,
- 역동적이고 부문별·이슈별 접근에 기초해 WTO 체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WTO 회원국들의 다양한 능력들을 잘 반영하기 위해 제안할 것임.

□ 양자협정 및 지역협정에 대한 접근법을 설계

- EU는 WTO가 글로벌 통상협상활동의 중심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양자협정 및 지역협정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EU는 FTA협정에 향후 다른 관심 있는 국가들이 기설정된 수준을 충족할 준비가 된다면 합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포함시킬 것임. EU는 이미 TiSA협정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EU는 이미 원산지 누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협정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을 향한 확고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음. 이는 범유럽지중해누적원산지제도(System of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로 알려짐.

- WTO의 주요 해결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 이니셔티브에서 얻은 해결책에 기초하여 기여방안을 개발하고,
- FTA에 가입을 희망하는 제3국들이 높은 수준의 양허 목표를 충족할 경우 FTA를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고,
- 진행 중인 협상에서 EU 및 기체결 FTA 국가들과 누적원산지방식 적용 가능성 타진

나. 양자관계의 진전

□ (북미) 미국 및 캐나다와의 진전

- (미국) EU-미국 FTA인 TTIP는 역대 가장 야심적이고 전략적인 통상협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우방이자 가장 큰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임. EU 관점에서 10차례의 협상을 통해 드러난 주요사항들은 1) 캐나다와의 FTA에 비견될 수 있는 야심적이고 균형된 시장접근 패키지, 2) 각자의 보호 및 규제자유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문에서 구체적인 규제적 산출물뿐만 아니라 규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3) 지속가능발전, 반부패, 에너지 및 원자재의 무역관련 측면, 투자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포함해 국제무역에 관한 원칙의 현대화 등을 포함함.
- (캐나다) 캐나다와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인 FTA로 무역과 투자분야에서 획기적인 자유화를 통해 기업들, 소비자, 시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조달 및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s)에 대한 양허를 유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용커행정부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TTIP를 마무리

■ 2016년 조기 비준을 위해 CETA를 이사회에 이어 유럽의회에 제출

□ 아태지역에서 전략적 참여

- (일본) EU-일본 FTA 완결은 전략적인 우선과제로서 양측의 교역·투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통합 및 보다 긴밀한 기업 간 협력, 국제규제 및 표준화기구에서 EU-일본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기대됨.
- (중화권) 중국과의 관계심화 및 재균형화를 위해 투자협정은 최우선과제임.
 - 중국은 EU 측에 FTA를 제안했지만 "EU-China 2020 Strategic Agenda"에 나타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함에 따라 투자협정만을 추진함.
 - 투자협정 완료는 중국의 개혁을 지원하고, 중국의 유럽투자계획에 대해 참여하며, 중국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에 대한 EU의 참여를 용이하게 할 것임.
 - EU는 중국의 다자통상체제 및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정보기술협정(ITA), 환경상품협정(EGA), 수출신용 및 정부조달협정(GPA)에 관한 국제작업반 등을 포함하여 복수국간무역협정에서의 역할 확대 촉진 및 지원할 것임.

- (한국) EU-한국 FTA는 현재까지 발효된 FTA 중 가장 야심적인 무역협정
 - 동 협정은 EU가 리스본 조약에 따른 권한을 부여받기 전에 협상됨에 따라 투자보호분야를 포함하지 못하여, 발효 이후 이행과정에서 일부 규정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투자보호부문에 대한 추가 및 시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협정 개정 필요
- (ASEAN) EU-ASEAN 경제권간 FTA 체결을 위한 노력 추진
 -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과의 FTA 협상 마무리
 - 여건이 개선되면 말레이시아, 태국과 협상을 재개
 - 미얀마와의 투자 협상을 마무리
 - 적절한 시기에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개시
 - ASEAN 국가들과의 양자 FTA가 EU-ASEAN FTA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상황점검(stocktaking) 회의 개최 예정
- (인도) 인도와의 포괄적이고 야심적인 FTA 협상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
-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는 유럽의 가치와 많은 이슈들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아태지역과 다자간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럽의 긴밀한 파트너임.
 -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한다면 보다 광범위한 아태지역 가치사슬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견고한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임.
- (중동) 이란 핵프로그램에 관한 합의를 지켜보면서 EU는 정해진 시기에 우선 이란의 WTO 가입을 통한 교역관계 심화 가능성을 조사할 것임.
 -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

- EU의 농업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권한을 요청
- EU-ASEAN 개별 회원국들과의 양자 FTA 협정의 토대 위에서 ASEAN과의 지역 대 지역 FT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
- FTA 협정개정 맥락에서 한국과의 투자에 관한 협상 시작을 추진
- 중국과의 투자협상을 완료한 후 홍콩 및 대만과의 투자협상을 개시

□ 아프리카와의 관계 재정립

- 빈곤 척결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 모두의 관점에서 주목
 - 지난 10년간 아프리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륙이었지만 핵심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임.
 - 아프리카는 국가들 간 높은 장벽을 가진 고도로 분화된 시장(fragmented markets)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4년도에 EU-아프리카 무역관계는 27개 서부, 남부 및 동부 아프리카국가들이 포함되는 3개 지역 경제동반자협정(EPA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을 마무리 지으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 이는 두 대륙 간에 새로운 역동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했고, 아프리카 지역통합을 지원하고 보다 넓은 아프리카 통합 노력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임.
- EPAs는 비즈니스 환경을 보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개혁에 의지에 달려 있음. EU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며, 개발원조를 통해 아프리카국가들이 효과적인 EPAs 이행의 혜택을 거둘 수 있는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EPAs는 대부분 상품교역분야만 해당하기 때문에 서비스 및 투자와 같은 다른 분야로 확장되는 EPAs를 위한 강한 기반이 됨. 투자 원활화 및 투자보호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일 것임.

- 회원국, 유럽의회, 시민사회 등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해 강력한 제도, 구조 및 메카니즘을 시행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과 EPAs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
- 지역적 통합에 대한 지원과 'Aid for Trade'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적의 역량강화 제공을 지속
- 특히,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검토조항을 사용하고 EPAs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
-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또는 지역경제공동체와 협력해 투자에 관한 원칙 개발

□ 중남미와의 광범위하고 야심적인 의제

- 중남미는 EU와 오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전체 중남미 33개국 중 26개국과 특혜 무역협정을 체결함.
-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중앙아메리카와의 FTA 및 카리브국가들과의 경제동반자협정은 무역투자, 지역가능개발, 지역통합 관련 공유 의제를 촉진함에 있어 새로운 역동성 형성
 - '01년 이전에 협상된 EU-멕시코 FTA는 호혜적이었지만 EU-Mexico Global Agreement를 통해 협상의 현대화를 시작할 적기가 되었음.
 - EU는 MERCOSUR와 '00년부터 FTA 협상을 해오고 있으며, 무역장벽철폐로 교역을 확대한다는 목적 하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FTA를 위한 약속을 재확인함.

- MERCOSUR와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포괄적인 FTA 협상 지속
- 멕시코, 칠레 FTA 현대화를 위한 협상지침(negotiating directives)을 요청
- EU의 투자진출이 많은 주요 중남미 국가들과의 투자협정을 고려하고, 투자에 대한 연성법원칙(soft law principles) 개발 용의

□ 터키와의 긴밀한 동반자관계

- 터키는 EU에게 가장 가까운 개도국이자 중동지역 핵심국가이나 무역·투자관계는 차선에 머물고 있음.
- '95년 체결된 EU-터키 관세동맹은 공산품만 해당하고 분쟁해결기구도 없기 때문에 서비스, 농산물, 정부조달과 같은 분야로 확대되는 관세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함.

- 터키와 관세동맹을 현대화하는 보다 새롭고 야심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

□ EU 주변지역에서 안정과 번영

- 유럽근린정책(European Neighbourhood Policy)은 최근 발전의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음.
 - (동부)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와의 가입협정(AA, Association Agreement) 및 심화포괄적자유무역협정(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TA)의 효과적인 이행
 - (남부) 모로코, 튀니지아와의 DCFTA 완료
- 집행위는 요르단과의 AA/DCFTA 가능성을 조사할 용의가 있지만, EU와 긴밀한 통합의 대상이 모든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함. EU와 지역무역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EU의 주변국 사이에서 PanEuroMed 원산지규정에 대한 단일 지역적 협약이라는 틀에서 진행 중인 협상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음.

-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와의 AA/DCFTA를 효과적으로 이행
- 모로코 및 튀니지아와의 DCFTA를 마무리
- PanEuroMed 원산지규정에 관한 단일지역협약 하에 동 규정을 현대화·단순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협상을 마무리

□ 러시아와의 도전적인 관계

- EU의 전략적 이해관계로 볼 때 러시아와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결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관계는 러시아의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내의 발전도 반영되어야 할 것임.

EU 집행위원회가 '15.10.27 발표한 2016년도 업무계획(Commission Work Programme 2016) 중 통상투자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정리함.

□ 미국과의 TTIP 협상 완료를 통상 분야 최우선과제로 명시

- 미국과의 TTIP 협상은 EU의 최우선 통상과제로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정이 되어야 하며, 투자보호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명시
- 집행위원회는 TTIP 협상과 관련하여 '15.11.6 통상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장(chapter) 제안서를 발표했는데 노동 및 환경보호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집행위원회는 TTIP 협상과 관련하여 '15.11.12 투자보호 및 투자법원제도에 대한 제안서를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송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도 게재함. EU는 '14.3월 이후 보류되어온 TTIP 투자분야 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다른 교역파트너들과도 투자분쟁해결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국제투자법원 설립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통상부문 중점추진과제

-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협력을 강화
 - EU-일본 FTA 및 EU-중국 투자협정 협상 완료
 -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협상권한 요구,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추진
- 27개 협상파트너를 포함하는 10개 양자협정 의제는 WTO 체제를 보완할 것임.
- 협상이 완료된 통상협정에 대한 비준 추진(캐나다 등)
- 기존 발효 중인 협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대화 추진
 - Eastern Neighbourhood와 같은 기존 협정을 심층 모니터링
 - 터키, 멕시코, 칠레 등과 새로운 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협정 현대화 모색

2

2016년 EU 통상투자정책 분야별 세부 계획

신통상투자전략('15.10.14), 집행위원회 2016년도 업무계획('15.10.27) 등을 기초로 '16년 추진이 예상되는 EU의 통상투자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함.

□ 통상투자협상

- 미국과의 TTIP 협상 완료
 - 미국이 최우선과제로 추진했던 TPP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EU와의 TTIP 협상으로 관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 EU 측도 TPP 타결에 자극받아 미국, 일본, 베트남 등 TPP 가입국가들과의 협정 발효 내지 협상 타결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 기타 주요 국가들과의 통상 및 투자협상 완료
 - 일본(FTA 협상), 중국(투자협정), 미얀마(투자협정)
- 협상 완료된 통상협정에 대한 EU 비준절차 조기 완료
 - 캐나다('14.8월), 싱가포르('14.10월), 베트남('15.8월)
- 새로운 FTA 협상 개시 추진
 - FTA :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 투자협정(장기과제) : 홍콩, 대만
- 기존 협정의 현대화 추진
 - 한국-EU FTA 협정 현대화(투자보호관련 별도 장(chapter) 추가 등) 제의 가능성
 - * 한국-EU FTA는 EU가 투자관련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기 이전에 타결됨에 따라 협정문에 투자보호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독립적인 장(chapter)이 없고, 투자보호 관련한 분쟁해결기구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EU-터키 관세동맹 현대화('16년 4분기 추진 예상)
- 이란 핵문제를 완료하고 제재조치를 해제한 이후에는 WTO 가입 지원
 - 현재 WTO 비회원국인 이란의 핵문제가 모두 해결된 이후에 이란의 WTO 가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

[참고] 신통상투자전략 중 지역별 양자통상과제 내역

지역		주요 양자 통상 목표
북미지역		
	미국	TTIP 협상 완료
	캐나다	CETA 조기발효를 위한 비준절차 추진
동북아시아지역		
	일본	EU-일본 FTA 협상 완료
	중화권	중국과의 투자협정 협상 완료 및 이후 홍콩, 대만과의 투자협정 추진
	한국	FTA 협정에 미포함된 투자분야 추가
	아세안	FTA 협정 발효(싱가포르, 베트남)
		협상 완료(미얀마와의 투자협정)
		협상 재개(말레이시아, 태국)
		협상 개시(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FTA 협상 재개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와 FTA 협상 개시
중동지역		
	터키	터키와의 관세동맹 현대화(서비스, 농산물, 정부조달, 분쟁해결 등 추가)
	이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
	GCC	FTA 협상 완료
중남미지역		
	멕시코	EU-Mexico Global Agreement의 현대화를 위한 협상 시작
	칠레	EU-Chile Association Agreement의 현대화 협상 타당성 검토
	MERCOSUR	FTA 체결 의지를 재확인
아프리카지역		
	아프리카 전체	아프리카지역통합 지원, 아프리카국가들의 국내개혁 지원
	EPA 체결국	27개국이 포함된 서부, 남부, 동부 3개 지역 EPA의 이행 보장
	EPA 체결국	향후 EPA를 상품 이외 서비스, 투자 등으로 확장(양자 투자협정 고려)
유럽근린정책지역		
	동부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와의 가입협정(AA) 및 DCFTA 이행
	남부	모로코, 튀니지아와의 DCFTA 협상 완료
	요르단	AA/DCFTA 가능성 검토

□ 새로운 국제적인 규범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

- 투자분쟁을 국제적인 투자법원체제로 바꾸는 변화를 주도
 - 미국과의 TTIP에서 투자분쟁법원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
 - TTIP를 시작으로 협상중이거나 향후 협상을 개시할 통상투자협정에서 ISDS를 투자법원체도로 교체할 것임.
- 인권, 노동권, 지속가능발전 등 기본가치에 대한 글로벌 확산 주도
 - ODA, GSP 제도 등을 통한 자체적인 확산 노력
 - ILO, OECD, G20 등 국제기구를 통한 확산 노력
 - '15.12월 파리 기후변화총회 결과의 시행 등
- 서비스,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강조
 - 인력의 일시이동에 대한 중요성 점증으로 이에 대한 규율문제가 집중 논의될 가능성
 - 터키의 관세동맹과 같이 기존 상품분야에 국한된 협정에 서비스 등 최근 상황 반영
 -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과세문제, 새로운 무역투자장벽에 대한 대응 등

□ 비관세장벽 및 불공정관행에 대한 강력대응

- 교역상대국의 협정이행 모니터링 강화
 - FTA, 투자협정 등은 물론 ODA, GSP 등 일방적인 특혜제도 등을 통해 외국의 비관세장벽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노력 강화
 - 통상부서 이외 해외주재 EU 공관 및 EU 회원국 재외공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수입장벽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을 직접 요구함.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WTO 제소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임.
 -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한다는 계획인 바, 글로벌 대기업 중심이던 개선요구 이외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농식품분야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장벽 철폐를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의 개선요구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응체제 마련 필요

○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 천명

- 보조금 지급, 우회수출 등에 대한 강경대응을 밝힘에 따라 유럽연합의 수입규제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과잉설비 및 초과공급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EU 기업들의 수입 규제 조사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제소 증가 가능성

- 특히 중소기업 대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키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제소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지리적 표시를 비롯해 예상하지 못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이나 해외주재 특허관과 방안 협의가 필요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통상압력으로 작용 예상

- 현재 EC 통상총국(DG Trade)에서 운영하는 헬프데스크를 확대하여, EU 중소기업이 교역상대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각종 인증, 라벨링, 수입허가 등 수입요건에 대한 내용을 쉽게 한 곳에서 알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EU 기업들의 FTA 활용률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 TTIP의 투자법원제도 최종안은 초안에 비하여 중소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모든 협정조항에 반영되어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일반특혜관세 수혜자격 졸업국가에 대한 요구 증가

- GSP 졸업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가까운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을 천명함에 따라 GSP를 졸업한 국가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Regulation (EU) No 978/2012의 Article 4는 GSP에 따른 관세특혜 부여기준을 명시

- 동 규정 Article 4(1)(a)에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3년 연속으로 고소득 또는 중상위소득 국가(high-income or upper-middle income country)로 분류한 국가에게는 GSP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명시(* 1인당 GNI기준, 고소득국가: \$12,736 이상, 중상위국 \$4,126~12,735)
- 동 규정 Article 4(1)(b)에는 GSP와 같거나 더 유리한 관세특혜를 받는 특혜시장접근협정의 혜택국가는 GSP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

- 이러한 방침은 양자협상은 물론 소규모 다자협상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GSP를 갖 졸업한 국가들에게 과도한 통상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EU 기업들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범유럽연합 노력

- FTA 협정 발효 즉시 기업들이 관세 인하 내지 철폐 효과를 충분하고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 회원국정부, 유럽의회, 이해관계자 등이 협력할 것임.
- EU의 정책방향은 FTA가 발효될 경우 FTA 효과가 이전보다 빠르게 발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미국 등 FTA가 먼저 발효된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개도국에 대한 기본가치 보장 촉구

- 기본인권, 노동권 등에서 EU 기본가치의 적용을 요구
 - 노동권, 기본인권, 환경보호 등 EU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가치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 다른 교역파트너들이 글로벌가치사슬 과정에서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 특히 GSP 등 일방적인 특혜제도를 통해 이행을 보장하되 심각할 경우에는 수혜를 중단시키는 것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개도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동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아동노동, 죄수강제노동, 인신매매와 관련된 강제노동 등을 없애고, 작업장에서 인간다운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로여건을 쉽게 바꾸기 어려운 최빈국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 개방적 통상투자정책 추구

- WTO DDA 진전을 위한 재활성화 노력 강화 예상
-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참여국가의 확대 가능성
 -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23개국 이외 신규 가입희망국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전망
 - 현재 협상에 참가중인 국가는 아래 23개국('15.7월 기준)
 - 유럽 : EU,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 북미 : 미국, 캐나다,
 - 중남미 :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 아시아 : 한국,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 중동아프리카 : 터키, 이스라엘, 모리셔스
 - * 대만, 파키스탄, 터키, 이스라엘은 서비스에 관한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가

- 환경상품협정(EGA)에 대한 확대 및 강화
 - 대상 분야도 환경상품 뿐만 아니라 환경상품 수출을 위해 필요한 관련 서비스도 추가
 - 14개 회원국이 '14.7.8일 협상 시작한 뒤 3개국(이)이 추가로 협상에 참여
 - * EU,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코스타리카(이상 최초 14개국),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추가 참여 3개국)
- 당초 참여하지 못한 제3국들에게도 참여 기회 제공
 - 이미 발효 또는 협상 완료된 협정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높은 양허수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추가 가입 가능
 - 장기적으로 양자협정 또는 다자간협정으로 연결시킨다는 구상
 - EU는 어떤 국가라도 추가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
- 기존 양자이슈를 다자화하기 위한 노력 강화 예상
 - 양자협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파급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양자통상투자협정에서 다루던 이슈들을 다자화 할 것으로 전망

3 향후 전망

□ 역외국가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모색

- '10년 유럽재정위기 이후 유럽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경제성장세가 미약함에 따라 역외시장에서 성장의 동력을 적극 모색
- 특히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ASEAN, 인도 등 아시아 지역 중요성 강조
 - 중국과 투자협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FTA 협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 EU-ASEAN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회원국별 FTA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대 지역 FTA를 추진한다는 계획
 - 일본과 FTA 협상도 '16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EU가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속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역외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역내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지재권 위반 제재 등 불공정무역 시정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미국과의 TTIP 협상에 역량 집중

- 용커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의 FTA 협정 체결은 최우선과제
 - 미국과의 TTIP 체결은 EU 집행위원회의 '15년도 업무계획은 물론 '16년도 업무계획에서 2년 연속 통상 분야 최우선과제로 언급되고 있음.
- 미국과의 TTIP를 통해 글로벌 통상투자분야의 새로운 기준 제시 전망
 - EU는 미국에게 이미 투자법원제도를 제안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투자법원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활용될 것으로 보임.
 - 국제투자법원 유치 가능성, 투자법원제도 참여 등을 사전 검토할 필요
- 한-미 FTA 발효('12.3.15) 이후 미국시장에서 FTA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TTIP 발효는 미국시장에서 기존 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점효과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요구됨.

□ 협상 타결 국가와 발효 가속화

- 베트남, 싱가포르, 캐나다 등 이미 협상을 마무리한 FTA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FTA 선점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임.
- * 우리나라의 상기 국가와의 FTA 체결 현황 : 싱가포르('06.3.2 발효), 캐나다('15.1.1 발효), 베트남('15.12.20 발효)
- 특히 중국에 이어 제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의 FTA 내용과 제도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럽연합에 대한 우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에 대한 신중한 진출

- EU는 통상정책수단을 활용해 유럽의 가치, 지속가능발전 등을 개도국으로까지 전파한다는 계획
- GSP, ODA 등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특혜여부를 인권, 노동권, 환경 등과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 최빈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정부의 정책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분쟁광물 등과 같은 새로운 규제조치가 신설될 가능성에 대비
- 새로운 규제·제도가 도입 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유럽연합 제도변화에 주의 요망

작성자

- ◆ 브뤼셀무역관 최현필 관장
- ◆ 통상전략팀 이주미 전문위원

Global Market Report 16-005

신통상투자전략으로 미리보는
2016년 EU 통상정책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6년 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6926-90-1 (95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신통상투자전략으로 미리보는 2016년 EU 통상정책
